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나10885 손해배상(자)
원고, 피항소인	1. A 2. B 3. C 4. D
피고, 항소인	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대표이사 이철영, 박찬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, 담당변호사 서인섭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가단35848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9. 23.
판 결 선 고	2015. 11. 4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 A에게 65,002,853원 및 그 중 23,710,155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2014. 7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, 나머지 41,292,698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2015. 11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원고 B, C, D에게 각 39,248,835원 및 그 중 14,425,435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2014. 7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, 나머지 24,823,400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2015. 11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 중 1/3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95,586,074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50,309,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. 7. 23.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 A에게 23,710,155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14,425,4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. 7. 23.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책임의 발생

(1) 사실의 인정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, 제10호증의 1 내지 4, 제11호증,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가) F은 2013. 7. 23. 20:55경 ○○우○○○○호 스파크 승용차(이하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라고 한다)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소재 양지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신상안교 방면에서 달천아이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3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제3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.

이로 인하여 마침 33라○○○○호 카렌스 승용차(이하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라고 한다)를 운전하여 제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은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는데, 그 결과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가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충돌하였다(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).

(나)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같은 날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.

(다) 원고 A는 E의 처이고, 나머지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며, 피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(2)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전자이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인 F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.

나. 책임의 제한 여부

피고는,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E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, 전방주시의무 태만, 경적 및 전조등으로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, 핸들과대조작 등의 운전상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나란히 겹쳐질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제3차로에의 진입을 시도하였고, 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, E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,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F의 위와 같은 운전상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지 E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만,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증인 G의 증

언, 당심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당심법원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, E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,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10%로 정함이 상당하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,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,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.

가. 일실수입

(1) 인적사항: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.

[기초사항]

성별	남자	사고시 연령	59세 1개월 13일
생년월일	1954. 6. 10.	기대여명	22.75년
사고발생일	2013. 7. 23.	여명 종료일	2036. 4. 25.

(2) 직업 및 경력: E은 약 34년간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 근무하다 2012. 10.

31. 퇴직한 후, 2013. 7. 10.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(이하 H이라고 한다)과 상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. 8. 12.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다.

(3) 소득: 월 3,750,000원 (E이 H으로부터 받기로 한 연봉 45,000,000원 / 12개월)

(4) 가동기간: E이 H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2013. 8. 12.부터 63세가 끝나는 날인

2018. 6. 9.까지

원고들은 E이 65세가 끝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60세가 끝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① H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끝나는 날로 하되 근로자의 의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9세로 H의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취업하는 E으로서 6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, ② 실제 H에는 정년을 넘겨 63세의 나이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수 있는 점, ③ H에서 망인이 담당할 업무는 H의 지사 관리업무로서 특별한 신체적인 능력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 점,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기대여명은 22.75년이고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E의 가동기간 종료일은 63세가 끝나는 날로 봄이 상당하다.

(5) 생계비: 수입의 1/3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7호증, 제8호증, 제14호증의 각 기재,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(6) 계산

- 기간초일: 2013. 8. 12.
- 기간말일: 2018. 6. 9.
- 월소득: 3,750,000원
- 생계비: 1/3 공제
- 호프만 계수

m1	호프만1	m2	호프만2	m1-2	적용호프만
58	51.8519	0	0	51.8519	51.8519

○ 일실수입: 129,629,750원 (3,750,000원 × 51.8519 × 2/3)

나. 적극적 손해

- (1)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 견인비: 144,000원 (다툼없음, 원고 A가 지출)
- (2)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: 1,614,429원 (다툼없음)
- (3) 장례비: 5,000,000원(원고 A 지출)

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 A가 장례식장 이용비 등으로 합계 19,477,93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,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, E의 나이,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5,000,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,000,000원으로 한정한다.

다. 과실상계

- (1) E의 과실비율 : 10%
- (2)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
 - ① 일실수입: 116,666,775원 (129,629,750원 × 0.9)
 - ② 견인비: 129,600원 (144,000원 × 0.9)
 - ③ 카렌스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: 1,452,986원 (1,614,429원 × 0.9)
 - ④ 장례비: 4,500,000원 (5,000,000원 × 0.9)

라. 위자료

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,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, 원고들이 F로부터 형사합의금

으로 3,000만 원을 받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, E에 대한 위자료는 45,000,000원,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6,000,000원, 원고 B, C, D에 대한 위자료는 각 3,000,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.

마. 상속관계

(1) 상속대상금액: 163,119,761원 (일실수입 116,666,775원 + 차량손해금 1,452,986원 + E에 대한 위자료 45,000,000원)

(2) 상속인 및 상속지분: 원고 A 3/9, 원고 B, C, D 각 2/9

(3) 계산

○ 원고 A: 54,373,253원 (163,119,761원 × 3/9)

○ 원고 B, B, D: 각 36,248,835원 (163,119,761원 × 2/9)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5,002,853원(상속금액 54,373,253원 + 견인비 손해 129,600원 + 장례비 손해 4,500,000원 + 위자료 6,000,000원) 및 그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23,710,1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. 7. 2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. 7. 23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, 나머지 41,292,698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. 11. 4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원고 B, C, D에게 각 39,248,835원(상속금액 36,248,835원 + 위자료 3,000,000원) 및 그 중 피고가 불복하

지 아니한 14,425,4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. 7. 2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. 7. 23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, 나머지 24,823,400원에 대하여는 2013. 7. 2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. 11. 4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,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최윤성
	판사	정우철
	판사	김승현